의 결 번 호	제 2019 - 10호
의 결 연 월 일	2019. 5. 31. (제 5 회)

의결사항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 출 자	위원장 박 능 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출연월일	2019. 5. 31.

1. 의결 주문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 제3차 기금운용위원회('19.3.29)에서 제안*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그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논의하기로 결정('19.5.3,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 참여연대 이찬진위원 제안

3. 주요 내용

○ 원안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특정 자격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위원의 준수의무' 관련 사항으로 구성*(제3조) 조항 개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①위원회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위원의 서약)에 위원의 준수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서약서(별지) 개정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 위원의 서약 주요내용)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3. 공정한 직무수행, 4. 비밀유지의무,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4. 실무평가위원회 심의결과('19.5.28)

○ '동의'한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어, 이러한 의견을 모두 기금위에 보고하기로 심의

- 당초 제안한 취지를 감안할 때, '동의하고 이행을 확약한다'는 문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동의'라는 것은 개인의 양심 문제이므로 이를 개개인에게 강조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행정법령 상 규정하는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고,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행정법령 체계상 '동의'라는 단어보다 '준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서약서 '3호'대로 '지침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개정 취지 반영 가능하다는 의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검토

Ⅰ. 검토배경 및 경과

□ **3차 기금운용위원회**('19.3.29, 이하:기금위)에서 이찬진위원이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을 제안**하여, **제4차 실무평가위원회**('19.4.26, 이하: 실평위) 및 **기금위**('19.5.3)에서 **제안에 대하여 논의**

* (이찬진위원 제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기금위 운영규정을 숙지·동의하고 그 이행을 확약한 자 중에서 기금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할 것(제3조 1항 개정)

□ **4차 기금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실평위·기금위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 그간의 제안된 내용 >

	이찬진위원 제안(3차 기금위)	**실평위 의견**('19.4.26)	**4차 기금위**('19.5.3) **제안**
주요 내용	제3조(구성)①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수탁자책임 관련 규정')을 숙지 및 동의하고 그 이행을 확약한 자 중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제3조(구성)①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수탁자책임 관련 규정')을 동의하고 이행을 확약한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위원의 서약) 서약서 개정방안 검토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비교	**<현행 규정과 차이점>** ▲수탁자책임 관련 규정을 숙지·동의·이행을 확약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제3조 1항 개정)	**<이찬진위원(안)과의 차이점>** ▲'숙지' 삭제, 동의·이행을 확약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규정은 동일(제3조 1항 개정)	**<이찬진위원(안)·실평위(안)과의 차이점>** ▲**제5조**(위원의 서약), **서약서 내용 개정** ▲수탁자책임 원칙 및 지침 개정여부 검토

Ⅱ. 실무 검토내용

◈ **원안에 대하여 ‘위촉 위원에게 특정 자격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개정**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위원의 준수의무’ 관련 사항에 해당하므로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제3조(구성)**조항 개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감안하고**

⇒ 제4차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제5조**(서약서포함)’ **개정 검토를 요청하**였으므로, **기금위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추진**

□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 검토)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이행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제출** 한 것으로

○ 수탁자책임 전문위 위원의 준수의무와는 연관성이 없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검토)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은 **수탁자책임 활동의 내용, 활동 관련 기준·방법 등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수탁자책임 전문위 구성, 위원 책무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

* ▲총칙(적용범위,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 내용 등), ▲의결권 행사,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 ▲소송제기, ▲공시 및 제출로 구성

□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 검토) **제5조**(위원의 서약)**에 위원의 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5조** 및 (별지)**서약서 개정 가능**

* (제5조 위원의 서약)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3. 공정한 직무수행, 4. 비밀유지의무,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제5조 본문 개정) 위원회 위원이 주요사안을 검토하거나 결정할 경우,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련 제반규정’에 따라** 할 것을 명시

○ (서약서 개정) **제3호**(공정한 직무수행)**에 ‘관련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공정하고 충실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 (현행)‘**지침**’ → (개정)‘**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으로 **구체화・명확화**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서약)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하는 붙임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이하생략)	제5조(위원의 서약) 위원회 위원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 국민연금 기금 운용관련 제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하는 붙임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이하생략)
[별지 서식] **서 약 서** 직위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성명 : ○ ○ ○ 본인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본 위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별지 서식] **서 약 서** 소속 : ○ ○ ○ 성명 : ○ ○ ○ 본인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본 위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본 위원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 본 위원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비밀유지의무) 본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본 위원은 직무 수행시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으며, 관련 사실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 (서명)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본 위원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 본 위원은 관계법령과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비밀유지의무) 본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본 위원은 직무 수행시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으며, 관련 사실 등을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참고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등 관련 규정 현황 및 관계

□ (**현황**)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존재

□ **각 규정간의 관계**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은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이행 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제출** 한 것으로

-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의 **기본 규정에 해당**

*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원(KCGS)에 제출('18.8월)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 세부내용>

구분	원칙 내용
원칙①	ㅇ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원칙②	ㅇ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원칙③	ㅇ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원칙④	ㅇ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원칙⑤	ㅇ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원칙⑥	ㅇ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원칙⑦	ㅇ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수탁자책임 활동의 내용,**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의 **‘원칙④, ⑤’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또한, 의결권 행사도 주주활동의 일환이므로, **기존의 ‘의결권 행사 지침’도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포함**

* ▲총칙(적용범위, 원칙, 수탁자 책임활동 내용 등), ▲의결권 행사, ▲중점관리 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 ▲소송제기, ▲공시 및 제출로 구성

○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원칙②(이해상충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라는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구성 및 위원 위촉방법 및 위원의 준수 의무 등을 규정

* 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 위원의 서약, 위원회 운영 등으로 구성

○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 **기금운용본부가**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과 관련한 **수탁자책임 활동 추진 시 대상기업 기준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

<별 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2019. 5. 3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와 책임투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거나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한다.

1.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 기준 등 검토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가 행사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내역 검토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 검토 또는 결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 결정
   가.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나.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다.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5.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검토
6. 위탁운용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위임 및 회수 결정
7.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방향의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범위 결정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책임투자 관련 사항 검토
   가. 책임투자 가이드라인
   나. 기금운용본부 책임투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특정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및 변경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토 또는 결정

제3조(구성) ①위원회 위원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회는 14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 관련사항, 책임투자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 :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에 관한 사항
2. 책임투자 분과위원회 : 제2조제3호, 제8호, 제9호에 관한 사항

④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는 9인 내외로, 책임투자 분과위원회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서약) 위원회 위원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 국민연금 기금 운용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주주권 및 의결권,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붙임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3. 공정한 직무수행
4. 비밀유지의무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전체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전체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분과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책임투자 분과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전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전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전체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⑦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비치) ①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의사록을 비공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과 기금운용본부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간사는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고 및 심의 안건의 제출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4.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공
5.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건의 공개 등) ①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해야한다. 전문위원회 논의 내용이 기금운용위원회 상정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5조1항에 의거하여 공개한다.
②회의 일시, 안건의 수는 공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내용 등에 따라서, 회의개최 2시간 전에 공개할 수 있다.
③회의 개최계획 및 논의결과는 위원장 및 간사가 공개한다.

제10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사를 거쳐 기금운용본부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기금운용본부는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위원들의 안건부의 요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기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필요에 의한 외부인사 초청강연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위원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의결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3. 29)

이 규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5. 31)

이 규정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서 약 서

소속 : ○ ○ ○
성명 : ○ ○ ○

본인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본 위원은 기금이 국민연금 급여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임을 인식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연금기금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 본 위원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기금에 대한 신뢰가 자신의 직무에 의하여 좌우됨을 인식하여 개인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보다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최우선으로 행동하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 본 위원은 관계법령과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및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기금을 위하여 공정하고 충실하게 직무를 처리하겠습니다.

4. (비밀유지의무) 본 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재임 중 뿐 아니라 퇴임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기금 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5.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본 위원은 직무 수행시 자신 또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으며, 관련 사실 등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 ○ ○ (서명)

<참 고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은 운용자산 가치를 보호·증진하는 장기투자자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등의 관리·운용을 맡은 수탁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기금은 투명하고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기업가치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 제고를 도모합니다.

기금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합니다.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따르며, 국민연금법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이하,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이하, '기금운용규정') 등을 준수합니다.

기금의 운용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하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직접운용과 위탁운용을 병행합니다.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와 국민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는 한국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로서의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정책, 지침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 가입자 대표, 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로, 수탁자 책임 관련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중요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는 공개 활동에 대한 승인 및 점검 등의 역할을 이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지침 등 관련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상장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단기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충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지침을 수립하고,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기금은 의결권행사 기준이 포함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도 마련하고 공개합니다. 의결권행사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관련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기금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 내역과 사유를 공개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행사 등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내용이 정리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한편, 기금은 자산소유자로서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부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행사 위임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임할 때에는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이행여부, 투자대상기업과의 이해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위임여부를 결정하며,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반할 경우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관련 역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교류합니다.

기금은 내부 여건, 수탁자 책임 활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장주식부분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우선 이행합니다. 향후 국내 채권 등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 적용 자산군 확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기금은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내·외부 담당자와의 이해상충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 기금 내부 요인에서 기인한 이해 상충 문제
   : 정부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 등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내부 수탁자 책임 활동 담당자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2. 기금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 이해 상충 문제
   : 위탁운용사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외부 자문기관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기금운용지침은 운용 독립성의 원칙을 정하고, 수탁자 책임 활동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규정합니다.

기금은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속한 가입자단체, 기관에서 추천한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위원간 상호견제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하는 수탁자 책임 정책을 검토하고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이거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안, 기금의 공개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결정합니다. 나아가,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언내용 전부가 기록된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 의무·준수 서약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등을 제출케 합니다.

또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으로 기금이익 최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기금운용 관련 위원, 보건복지부, 위탁운용사, 거래기관 등 기금운용 관련 직원 대상),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제한 규정(보건복지부 기금운용 관련 직원 대상),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관련 임직원 대상)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해 상충 방지 수단을 도입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책임 활동 기준과 절차,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을 정한 지침 공개, 수탁자 책임 활동시에 엄격히 준수
-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시 외부기관의 자문 참고
-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의결권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내역을 공개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투자대상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집된 정보를 면밀히 분석합니다.

기금은 투자대상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회와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 경영성과 및 주요 재무정책, 중장기 경영전략 등 재무적 요소
- 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

특히, 비재무적 요소 관련 투자대상기업 점검은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모형의 지표 등을 기반으로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도록 합니다. 기금운용본부 ESG 평가모형의 지표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다양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자 하며, 투자대상기업과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합니다.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합니다.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개합니다. 지침은 수탁자 책임 활동 목적과 기본 원칙, 수탁자 책임 활동 유형,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 기업을 정하는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금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활동범위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의결권행사
- 중점관리사안 선정
-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
-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의 면담,
- 질의서·의견서 발송 등
-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 공개서한 발송
- 의결권행사 연계
- 주주 대표소송, 투자자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사회 구성·운영, 이사·감사선임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주주권행사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미공개 중요정보, 공정공시 대상정보 등을 원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얻은 경우, 기금은 해당 정보의 공시 또는 공개를 기업에 요청하거나 직접 공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기금은 기금이 보유한 모든 상장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결권 행사는 기금자산의 증식과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기금은 충실하고 전문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의안분석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 기금의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안에 대한 정보 수집,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해당 기업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의 기준, 절차, 의사결정 주체, 이해상충 방지 정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 활동지침에 따릅니다. 지침을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금은 상장주식 의결권행사 내역과 지침상 근거조항을 포함한 세부 반대 사유를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기금운용현황 보고, 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의결권행사 내역, 안건 유형별 반대율, 주요 반대 사유 등을 공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가 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의결권행사 결정과 세부 반대 사유를 공시합니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사전공시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이 필요한 주요 의결권행사 결정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태로 상세히 알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의결권행사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기금은 의결권 행사내역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금운용현황과 방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 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또한,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사안을 검토 또는 결정하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회의시 발언 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기금은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서술·정리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반대 등 의결권행사 내역 및 비율, 주요 반대사유 등 요약
- 경영진과 대화, 서신발송, 주주제안 등 공개 가능한 유형별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내역
- 재무, 비재무(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공개 가능한 주제별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내역

구체적인 공시 대상 정보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기금운용지침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릅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의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주총회 의안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이 속한 산업과 관련 제도,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위탁운용사와의 수탁자 책임 활동 경험 공유 및 해외 기관투자자 협력기구 참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기금은 전문성 있는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을 활용하기 위해 해당 기관 선정·평가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이해상충 방지 정책, 수탁자 책임 활동 실적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금은 위탁운용사 및 외부 자문기관 활용시 기금이 요구한 수준의 충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참 고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기금은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② 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③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④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할 수 있다.

⑤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한다.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결권 행사
2.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3. 예상하지 못한 주주가치 훼손 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등
4. 소송 제기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안

제5조(의사결정 주체 등) ① 기금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기금운용본부(이하 “기금운용본부”라 한다)에 설치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한다. 다만, 의결권행사의 경우 기금의 보유지분율과 보유비중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다.

1.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하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한 사안
2. 전문위원회 주주권행사 분과 위원 3인 이상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3.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③ 제4조제5호에 따른 수탁자 책임 활동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한다.

④ 기금은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하여 자문기관,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행사기준

제6조(의결권 행사 대상)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10 미만이고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인 경우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행사기준의 기본원칙) 의결권 행사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른다.

1.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기금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2.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3.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등을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기권(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안건별 세부기준) 주주총회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은 국내주식의 경우 별표 1, 해외주식의 경우 별표 2와 같다.

제9조(위임장 제공) 기금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되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 다른 주주 및 위탁운용사 등에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위임장에 기금의 의견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제10조(중점관리사안) 중점관리사안은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정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2.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3.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비공개대화) ① 기금은 보유지분율이 1000분의 50 이상 또는 보유비중이 국내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10 이상이거나,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10 이상인 기업 중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과 비공개대화를 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비공개대화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비공개대화는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의 면담, 비공개서한(질의서, 의견서) 발송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별표 1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행사를 연계할 수 있다.

제12조(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① 기금은 제11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1년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기업에 대하여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은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즉시 선정할 수 있다.
③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① 기금은 제12조에 따른 비공개중점관리기업이 선정연도 말까지 개선이 없는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금운용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의 경우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비공개중점관리기업은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즉시 선정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비공개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인 비공개대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4조(공개서한) ① 기금은 제13조에 따른 공개중점관리기업에 대하여 공개서한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기업의 입장표명 요청,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기업의 조치사항 확인, 개선대책 요구, 이사회·경영진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면담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비공개대화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공개서한을 발송할 수 있다.

제15조(주주제안) 기금은 제10조제1호 중점관리사안에 한해, 제13조에 따른 공개중점관리기업에 대하여 배당 관련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장 예상하지 못한 우려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제16조(대상) 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과 관련하여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1조 및 제14조는 본 장에 준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비공개 대화 기업 대상 관련 지분율, 보유비중 등 요건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소송 제기

제18조(주주 대표소송의 제기) ① 기금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 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기업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제소의 결정) ① 기금은 제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승소가능성, 소송에 따른 효과대비 비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소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주 대표소송의 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사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기업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확정되었는지 여부
2.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이 관련 소송의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한지 여부
3.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제소의 실익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제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하여 전문성 있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외부 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소송 의뢰)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제19조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결정한 경우, 기금운용본부는 제1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단 주관부서에 소송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소송의 제기) 기금은 기금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에 준용한다.

제2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소송 제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단 「소송사무처리 및 법률자문예규」 및 공단의 관련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6장 공시 및 제출 등

제24조(통보 및 공개) 전문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즉시 기금운용본부에 통보하고 공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

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공시 및 제출) ① 기금운용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다만,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공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2. 기금운용본부 또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내역 및 세부 반대 사유
3. 공개중점관리기업명, 공개서한 등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 발생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4. 소송 대상, 소송 내용, 소송 제기 이유 등 소송 제기 내역
5. 기타 전문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 사항
6. 상기 각호와 관련된 통계 내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결정이 있은 때(제1항제2호의 경우는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통계 내역은 연간공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할 수 있다.

1.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의결권 행사방향
2. 전문위원회가 사전공개 하기로 결정한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방향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공개는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금의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

⑤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을 분기별로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6조(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 ① 기금운용본부는 의결권행사, 주주관여활동, 관련 통계 등을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연간 단위로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기금운용본부는 작성한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서를 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7조(내부통제) 기금운용본부의 준법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자는 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이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제28조(기록보관)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 활동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역량강화)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와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지침 검토주기) 전문위원회는 이 지침을 매년 검토하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검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를 제외한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26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9. 3.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를 제외한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제26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기금운용본부가 배당관련 기업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 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8. 다수의 정관변경
한 개의 안건으로 다수의 정관변경 내용이 상정되고 이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9.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10.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1. 이사회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2.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3.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14.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6.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7.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8.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20.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사회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 지침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인원과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에 찬성한다.

II-3. 감사 및 감사위원회

21.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상법 제409조 제2항에 근거한 의결권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3. 이사 및 경영진 보상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4.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5.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6.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7.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8.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9.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0.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4.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5.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지침 제3장 및 제4장 관련 수탁자 책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자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1.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2. 중요한 지분·거래·경쟁관계 등에 있는 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3.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동안 75% 미만이었던 자
4. 재직한 임기와 신규로 재직할 임기를 포함하여 사외이사 재직연수가 당해회사 및 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는 자
5.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30. 이사의 선임 및 31.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재선임의 경우에는 세부기준 31.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3. 이사보수한도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③ 지침 제10조 제2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반대한다.

34. 감사보수한도 승인

33. 이사보수한도 승인을 준용한다.

35.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①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1]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② 지침 제10조 제2호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반대한다.

V.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7. 합병 및 인수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38. 영업양수도 등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39.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Ⅶ. 자본의 감소

40.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Ⅷ. 기타

41.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42.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3.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44.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5영업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45. 비금융주력자 보유한도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시, 행사지침 및 세부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서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 수 중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 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한다.

1) 황금낙하산 : 임원 해임 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주체의 인수비용을 증가시키는 계약

[별표 2]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I. 재무제표 승인
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 이외의 의견일 경우에는 기권 또는 반대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의 적정성
회사의 적정배당 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한다. 다만,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기회, 자사주 매입규모, 임직원에 대한 보상 및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또는 과다한 경우 반대한다.
II. 정관 변경
II-1. 주주의 권리 및 주주총회
3. 회사명 변경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4. 회계연도 변경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요건 변경
①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②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6.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7. 의결주체의 변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8. 연계된 안건
다수의 정관변경 안건이 일괄 상정되고 이 중 일부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 안건 전체에 대하여 반대한다.
9. 의결권 대리행사자의 범위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10. 전자투표 및 서면투표
①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의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만 투표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한다.
II-2. 이사회
11. 이사회의 규모
이사의 수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하되,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수를 제한하거나 개별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는 안에 반대한다.
12. 사외이사의 비중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13.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①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반대한다. ② 고위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직책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제안에 찬성한다.
14. 이사의 추천절차 및 자격기준
① 이사의 추천절차를 도입하거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천절차를 폐지하거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이사추천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 ③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안에 찬성한다.
15. 시차임기제
시차임기제의 폐지에 찬성하고, 시차임기제의 도입에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행사할 수 있다.
16. 사외이사의 임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17. 이사후보 투표방식에 대한 변경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찬성하고, 일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에 반대한다.

18. 집중투표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 반대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찬성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II-3. 감사 및 위원회

19. 감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②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20.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21. 위원회 구성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보상위원회 구성시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이는 제안을 찬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낮추는 안에 반대한다.
②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안건에 대해 찬성한다.

II-4. 임직원에 대한 보상

22. 이사 및 경영진 보상

①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② 보상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하고, 이를 번복하는 안에 반대한다.
③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성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한다.
④ 이사의 재임기간 중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인 사실이 사후에 밝혀질 경우 부당하게 받은 보상을 반환시키는 안에 찬성한다.

23. 주식 연계 보상

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시장요인을 고려하거나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발행허용범위 이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획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③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안에 반대한다. 다만,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찬성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 유보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한다.
⑤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 혹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하거나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24. 자사주 매수를 위한 회사의 대부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II-5. 자본 구조
25. 채무재조정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6. 증권의 전환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27. 주주의 신주인수권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약화시키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28. 종류주식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이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III.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29. 이사의 선임
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이사 후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다. 1.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2.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3.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②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한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30.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
다음의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8.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9.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의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10. 그 밖에 회사와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1. 사외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을 준용하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할 수 있다.

1. 제30조 사외이사의 독립성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 자
2.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한 자
3. 당해 회사에 사외이사로 재직할 연수가 과도하게 장기인 자

32.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은 29. 이사의 선임 및 31. 사외이사의 선임의 건을 준용한다.

33. 외부감사인의 선임

① 외부감사인을 재선임하는 안건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보수 책정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하는 안건에 대해 다음의 사유가 없는 경우 찬성한다.

1. 회계장부나 감사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
2. 충분한 설명 없이 외부감사인이 교체되는 경우
3. 감사용역에 대한 보수가 유사기업 평균에 비해 크게 높거나 비감사용역에 대한 보수가 전체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은 경우

② 외부감사인의 임원이 해당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였거나 회사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에 반대한다.

IV. 이사 및 감사의 보상

34. 주요임원 보상에 대한 권고안건

주요임원에 대한 보상을 주주총회의 권고안건으로 하는 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보상에 대한 공시수준, 보상의 성과와의 연계성,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반대할 수 있다.

35. 이사(임원)보수 승인

①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② 보수한도 수준이 회사의 규모,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36. 감사보수한도 승인

35. 이사(임원)보수 승인을 준용한다.

37.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계약 등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8.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①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1.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2.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② 사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함으로서 똑같은 효과를 추구하는 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③ 사외이사들에게 보상의 일부를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Ⅵ.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39. 합병 및 인수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40. 영업양수도 등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③ 영업에 필요한 주요 자산을 처분하여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안에 반대한다.

41. 회사분할 및 분할합병

① 사안별로 검토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② 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 할 수 있다.

Ⅶ. 자본의 감소

42. 자본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안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자본 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2. 자본조달,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자본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사업축소나 폐업계획에 기금이 동의한 경우
4.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5. 유상감자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Ⅷ. 기타
43.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①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②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에 찬성한다. ③ 법정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44. 주식의 제3자 배정
주식을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주식의 발행사유, 발행가격, 발행규모, 유동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찬성할 수 있다.
45.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분할, 주식교환 등
사안별로 검토하여 행사하되, 주주가치의 훼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한다.
46. 주주총회 안건의 사전공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임원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승인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일 전에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반대를 원칙으로 한다.
47. 관계자 거래
관계자와의 거래 승인은 사안별로 판단하되 이해관계의 정도, 거래의 공정성 및 적정성, 사외이사 및 독립적인 재무전문가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우 반대한다.

[별표 3]

의결권 행사내역 공시 양식

회사명	OOO	주주총회 일자	0000.00.00.	정기/임시
의안번호	의안내용	행사내용	반대 또는 기권시 사유	근거조항

[별표 4] 중점관리사안 선정 기준

1.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2.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보수금액, 기업의 경영성과 등과 연계되지 않은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하여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3.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국가기관의 조사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① 당해 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행위 ②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 ③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경영진의 사익편취)
4.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중 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안건의 경우